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98
----------	------

발의연월일 : 2017. 3. 27.

발의자 : 노웅래 · 홍문표 · 이재정
조승래 · 장정숙 · 강창일
윤관석 · 안규백 · 도종환
박정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u>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 style="margin-top: 20px;">1. ~ 4. (생략)</p>	<p>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u>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u></p> <p>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